서 울 특 별 시

우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3707-8235~6 / 전송 3707-8249
처리부서 : 주택재개발과(별관 2동 2층) 과장 배경동 담당사무관 정명일 담당 전석기

문서번호 주계58531-/33
시행일자 1999. 1. 20.
(경 유) (제 1 안)
수 신 내부결재
참 조

고시통고
1999. 1. 20
제1999-12호

취급		시 장
보존		
주 택 국 장	전결	
주택재개발과장		법무담당관실 사필 2담당사무관
기안		협조

제 목 신공덕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 및 지적승인

1. 마포 도계58531-1447호(98.12.21)및 재계58531-324호(98.4.10)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마포구 신공덕동 148-134번지 일대에 대하여 마포구청장으로 부터 주택재개발구역지정 요청에 의하여 우리시 '98년 제4차('98.6.2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되어, 수정내용(층수는 12~13층이하,서측으로 도로폭 4m를 추가확폭,전면건물 Set back)을 보완 및 공람을 실시하고 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 신청된 바,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과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을 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자 하오니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고시(안) 1부.
2. 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지적승인 도서 1부. 끝.

(제 2 안)
수 신 행정자치부장관
참 조 법무담당관
제 목 관보게재 의뢰

원본대조필

1. 우리시 신공덕제4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보게재 의뢰하오

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구분 : 고 시

나. 게재건명 : 신공덕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지적승인 고시

다. 법적근거 :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12조,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제8조

첨 부 고시문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제 3 안)

수 신 건설교통부장관

참 조 택지개발과장

제 목 신공덕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지적승인 보고

1. 우리시 마포구 신공덕동 148-134번지 일대에 대하여 마포구청장으로 부터 주택재개발구역지정 요청이 있어,

2.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구역지정과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을 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였기에 보고 합니다.

첨 부 1. 고시문 사본 1부.

2. 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지적승인 도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제 4 안)

수 신 마포구청장

이 보 게 조 필 제

참 조 도시개발과장

제 목 신공덕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지적승인 통보

1. 마포 도개58531-1447호(98.12.21) 및 재개58531-324호(98.4.10)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마포구 신공덕동148-134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구역지정과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 승인을 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별첨과 같이 고시하였기에 통보하니,

3. 관계도서를 해당부서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도시계획 관련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사업시행인가시 반영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가. 반영할 사항

(1) 지하주차장 회전공간 여유확보토록 조정(Car lift 설치는 불합리 하므로 선형 또는 Loop형으로 결정

(2) 평형별 배치조정(동별로 같은평형)

(3) 층수 조화이루도록 조정(12-13층으로 일정하게 조화를 이룰 것)

(4) 혼합형(계단식과 복도식)을 1개 형식으로 조정

첨 부 1. 고시문 사본 1부.

2. 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지적승인 도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제 5 안)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신공덕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지적승인 통보

1. 우리시 마포구 신공덕148-134번지 일대에 대하여 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지적승인하고 별첨과 같이 고시하였기에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첨 부 1. 고시문 사본 1부.

2. 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지적승인 도서 1부. 끝.

주 택 재 개 발 과 장

수신처 도시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원본대조필

고시심사	1999. 1. 19	제 11 호
공구	법제심사관실	법무담당관
김광명	사무관 이종범	박 돌봉

고 시 (안)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 - 12 호

신공덕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지적승인

1. ~~우리~~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148-134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구역지정과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을 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과(전화 : 3707~8235) 및 마포구 도시개발과(전화 : 330~262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9년 1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재개발사업의 명칭 : 신공덕제4주택재개발사업

나. 재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공덕제4주택재개발구역	마포구 신공덕동 148-134번지 일대	6,057	신 규

다. 토지이용계획

원본대조필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도시계획 용도지역	계	6,057	100	
	일반주거지역	4,306	71.09	
	준주거지역	1,751	28.91	
택지 및 공공시설	택지	5,373.74	88.72	
	공공시설(도로)	683.26	11.28	

라. 공공시설의 위치 및 규모

◇ 도로결정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점	종점	
신설	소로	1류	1	10M	일반도로	구획도로	2.5	신공덕동 146-101	신공덕동 146-81	도로확폭
	소로	2류	1	8M	〃	〃	135.5	신공덕동 146-81	신공덕동 139-351	〃

마. 건축시설계획결정조서

결정구분	획 지 구 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 층수
	명칭	면적(㎡)					
신축	택지	5,373.74	신공덕동 148-134일대	공동주택 (아파트)	25%이하	250%이하	지상13층 해발92M이하

바. 주택의 규모별 비율 : 전용면적 60㎡이하는 전체 건립주택수의 50%이상
전용면적 85㎡이하는 전체 건립주택수의 80%이상

사. 사업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2 년 원본대조필

아. 관계도면 : 생략(주택재개발구역지정 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과 및 마포구 도시개발과에 비치된 도서와 같습니다.)